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1 선고 2019가단1038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종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주식회사 C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한 2018. 5. 1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271,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IBK기업은행과 E은행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가 2018. 5. 18.경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 5,900만 원¹⁾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기계에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전기공사에 수리시운전까지 하여 9,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위 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07,54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8. 3. 22. 선고되어 2018. 4. 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주식회사 C의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C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식회사 C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한편 주식회사 C으로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을 2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5. 4.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측이 이 사건 기계의 소재를 파악하게 된 경위(피고측 공장장이 먼저 알고 D에게 연락)도 이례적이고, 공장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없었으며, 전기가 없어서 돌릴 수도 없었다는 계약 당시 정황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3. 원상회복의 가부 및 배상가액의 특정

가. 어느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 D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가치가 현존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액배상을 명한다.

다.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인 5,9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인 37,281,000원(38,090,000원에서 호이스트 가격 819,000원을 공제한 돈이다. 을 제8호증)을 배상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가액만을 취신하게 하는 것도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가액배상액은 37,281,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27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별지

목 록

명칭(종류) 구조·규격·형식·용량

멀티스포츠용접 SYSTEM(메쉬웬스기계)

Cap ' :42Point(현:36Point)

1) 보빙기(코일적치대)

.코일적치대:700kg×36ea

2) 메쉬웬스제조기

.폭:2500mm

.후레임&샤프트:125×150×7mm

.크랭크&연결세트:ø120×50mm×2ea

.상.하이동가이드:150×300mm×2ea

.옥걸이:ø2.5~5mm×123ea

.총선이동가이드:35×550mm×1set

.동력전달장치:15Hp

.직선공급장치:ø50mm外

.용접자동제어 Box:150KVA×5Time

.용접트랜스:150KVA×5ea

.샤링기:7.5Hp×1ea

.Control Panel

-Servo Motor 外

제작자 제작일자

F 2006. 10.

수량

1식

1) 6,1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는 보이나,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당사자들 주장 그대로 인정한다.